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91호
무교·다동구역 제2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367호(1973.9.6)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(다동)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-207호(2012.8.2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무교·다동구역 제2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8월 3일

서울특별시장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무교·다동구역 제2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(변경없음)

나.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기정	무교·다동구역 제2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	중구 다동 85번지	2,114.7	-	2,114.7	

다. 정비계획

- 1) 토지이용계획 (변경없음)
- 2) 용도지역·지구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- 3) 정비기반시설(도시계획시설)설치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- 4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 - 가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 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변경	무교·다동구역 제25지구	2,114.7	획지	2,114.7	중구 다동 85번지	1	-	1	-	-	

나) 건축시설계획

구분	구 역 구 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무교·다동구역 제25지구	2,114.7	획지	2,114.7	중구 다동 85번지	업무시설	41-45	680-750	17층/5층	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변경	무교·다동구역 제25지구	2,114.7	획지	2,114.7		업무시설	49.38 이하	760.0 이하	67.7m 이하	
건축물 용적률 완화사항 (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)			■ 용적률 = 기존용적률 + 완화 용적률 = 742.87% + 17.13% = 760.00% (건축계획 용적률 : 756.09%) ▶ 기존 용적률 : 742.87% (기 완료 건축물) ▶ 완화 용적률 : 17.13% 적용 산식 연면적 완화에 대한 허용기준(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) · 산출기준: (용도 도입면적/대지면적) × 기존용적률 × 보상계수(0.5) = (가로활성화용도 1,141.31㎡/2,114.7㎡) × 742.87% × 0.5 = 200.46% → (적용) 17.13%							

5) 기타 정비계획 사항 : 변경없음

2. 변경사유

- 1973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1987년 5월 사업 완료 이후 30년이 경과된 구역으로서,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보행 활성화 등 가로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,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건폐율, 용적률 확대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

3. 관계도면 : 붙임참조

-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, 정비기반시설 결정도(변경없음), 정비계획 결정도(기정/변경)
 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 참조

4. 열람장소

-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 2133-4633) 및 중구 도심재생과(☎ 3396-5783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